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19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 : 김상욱 • 이준석 • 김예지

서천호 · 김한규 · 정준호

천하람・김 윤・이소영

박주민 • 박지혜 • 성일종

김용민 · 조경태 · 이해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와 관련한 국경일은 없는 실정임.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은 군사 독재 정권을 시민혁명으로 종식 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 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진 기념비적 항쟁임.

이에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10민주항쟁일인 6월 10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6 · 10민주항쟁: 6월 10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제2조(국경일의 종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2. 6·10민주항쟁: 6월 10일</u>		
<u>2.</u> ~ <u>5.</u> (생 략)	<u>3.</u> ~ <u>6.</u> (현행 제2호부터 제5		
	호까지와 같음)		